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로당 지원 확대 등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99호)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81호)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53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7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6
1. 경로당 지원 확대(김성원의원안, 강명구의원안)	6
2. ‘성적 수치심’ 표현 변경(권향엽의원안)	18
3.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 범위 확대(안상훈의원안)	22

I. 개요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29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7.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과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 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2.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8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6. 6. 2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3.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3.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 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4.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9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7. 15.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II. 검토의견

1. 경로당 지원 확대(김성원의원안, 강명구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김성원의원안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보험 가입 비용 보조 및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절감된 냉난방비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2제1항, 제3항에서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하여</u>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신 설>

<신 설>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력이 급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1)에 따라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임.

경로당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친목도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사서비스도 주요 이용 목적 중 하나로 나타남. 복수 응답 방식으로 조사된 2017년과 2020년에는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이 각각 57.2%와 62.5%였으며, 단일응답 방식으로 조사된 2023년에는 19.2%로 친목도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식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주요 이용 이유로 나타난 점은 경로당이 친목·여가 공간뿐 아니라 노인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1)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 경로당 이용 이유 >

(단위: %)

연도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82.9	62.5	19.0	11.0	2.3	1.6	1.3	0.2
2023	66.2	19.2	3.4	4.6	0.4	1.0	0.9	4.3

* 2017·2020년은 복수응답, 2023년은 단일응답

* 자료: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및 관련 예산사업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6년의 경우, 냉방비는 경로당 별로 연 33만원, 난방비는 연 200만원이 지원되고, 양곡구입비는 정부양곡 20kg 12포에 해당하는 62만 8천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및 생활용품비 등의 용도로 지원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지원기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있음.

또한 2026년에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²⁾ 2026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식재료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은 여전히 양곡구입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26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 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 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 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200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62.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12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 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식사제공 확대(8포⇒12포)('24.10.7.)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724개소 중 6만 1,333개소(88.0%)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주 3.6회이고, 지역별로 광주가 주 4.2회인 반면 대전 3.1회, 제주 1.5회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비율은 대전이 97.2%로 가장 높고 제주가 78.9%로 가장 낮음.

< 2025년도 지역별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

(기준: 2025. 9. 30. / 단위: 개소, %, 회)

시 도	경로당 수 (개소)	식사 제공중인 경로당 수 (%)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회)
합계/평균	69,724	61,333(88.0)	3.6
서울	3,648	3,331(91.3)	3.9
부산	2,427	2,215(91.3)	3.4
대구	1,856	1,576(84.9)	3.6
인천	1,585	1,411(89.0)	3.5
광주	1,391	1,337(96.1)	4.2
대전	868	844(97.2)	3.1
울산	862	806(93.5)	3.2
세종	525	502(95.6)	3.5
경기	10,432	9,113(87.4)	3.2
강원	3,369	2,830(84.0)	3.7
충북	4,298	3,646(84.8)	3.8
충남	5,973	5,135(86.0)	3.2
전북	6,956	5,774(83.0)	3.9
전남	9,256	8,697(94.0)	3.6
경북	8,165	7,247(88.8)	4.0
경남	7,639	6,495(85.0)	3.8
제주	474	374(78.9)	1.5

* 자료: 보건복지부 (2025.9월 기준 지자체별 제출자료 기준)

□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2026년 6월 기준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에는 총 4만 8,360명이 참여하고 있음. 일부 현장에서는 급식지원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음.³⁾

<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 >

(기준: 2026. 6. / 단위: 명, 백만원)

노인일자리 유형	추진실적 (명)	지원예산 (백만원)
합계	48,360	207,785
노인공익활동	39,563	133,327
노인역량활용사업	8,797	74,458

* 자료: 보건복지부

3) 선언과 현실, 양극화되는 '경로당급식', 2026. 3. 17. 대한급식신문

□ 먼저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로당 급식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결식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경로당의 급식 운영은 조리시설, 급식공간, 급식지원 인력 등 운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바, 주 5일 이상 급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급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 지원 및 위생·안전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약 4만 8천 명의 급식지원 인력이 배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급식지원 인력은 조리기구와 화기를 사용하고 조리·배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상, 낙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 보조와 보험 및 안전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부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경로당의 자율성과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인 만큼, 개별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충분한지와 다른 보조금 사업과의 형평성, 법체계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주 5일 급식 제공, 급식지원 인력 지원, 보조금 절감액 활용 등은 경로당 운영 여건과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경로당 급식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별 경로당의 운영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경로당은 조리시설이나 급식 공간이 부족하고 급식지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률상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급식지원

인건비와 보험료, 안전교육 등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지자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24.5월 ~), '27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임 - 다만, 개정안 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 확대를 법제화하며,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로당 식사제공 관련 예산의 편성 등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정당국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경로당 식사제공 예산은, 경로당 지원(지특회계 자율계정) 사업 중 양곡비 지원과 부식비 지원('27년 반영 필요)이므로, 자율계정 특성 상 지자체 협이가 필요함 - 또한,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 인건비 보조(안 제37조의2 제3항)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급식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국가 및 지자체 지원(안 제37조의2 제4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 냉난방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을 ①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②부식비로 사용하는 것(안 제37조의2 제5항)은, ①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시행령 개정 등 협이가 필요하며, ②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은 '25.12.31.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부식비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점과 매년 집행잔액 수준(약 50억 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025. 12. 31. 개정) >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 </thead> <tbody> <tr> <td>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td><td>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td></tr> </tbody> </table>	개정 전	개정 후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개정 전	개정 후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이 대부분으로 일반 가정집보다 열악한 수준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급식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				

	며, 환기 시설, 조리공간, 위생설비 등이 집단 급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고령자 대상 집단급식 과정에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운영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 등 급식 제공이 가능한 시설 여건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초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재정 부담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 가중, 지역별 운영 여건 미반영, 보조금 관리 체계의 혼선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국비 지원 방안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기준 마련 및 보조금 관리 원칙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 특별자치도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 따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 경로당의 경우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1회 식사인원이 집단급식소 수준 이상인 곳이 다수임 - 경로당 이용어르신의 안전한 급식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원지원 근거 마련 필요

□ 강명구 의원안은 현행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의 보조에 대한 규정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u>양곡구입비</u> 등의 보조)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u>냉난방 비용</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u>지원</u>) ① (현행과 같음) ② ----- -----<u>운</u> <u>영에 필요한 비용</u>----- -----.

□ 현행법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에 한하여 국가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운영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공간을 넘어 식사 제공, 건강관리, 돌봄 등 지역사회 복지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운영비 지원 근거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금법 상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지역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소관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개정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집행기준의 차이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전문인력과 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보완 없이 운영비 지원만 확대하는 것은 취약노인 돌봄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로당의 돌봄기능은 노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경로당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역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 운영비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집행기준 차이와 예산집행의 혼선이 예상됨 - 전문인력과 서비스 체계 보완없이 운영비만 확대하는 것은 취약노인 돌봄강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따라서, 법률상 운영비 지원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돌봄기능은 노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2. ‘성적 수치심’ 표현 변경(권향엽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금지 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9(금지 행위)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에게 <u>성적 수치심</u> 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2. ----- <u>성적 불쾌감</u>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특별양형인자⁵⁾의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⁶⁾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30선」을 보면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치심’이라는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감정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중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일반적인 의미에서 ‘수치심’은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수치’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반면, ‘불쾌감’은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5)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특별양형인자는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한다. 일반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를 말한다. (2026 양형기준 해설, 대법원 양형위원회)

6)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2022. 5. 25., 3면.

않은 느낌”을 의미하므로⁷⁾,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스스로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소지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인이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보다 포괄하고, 해당 노인에게 부끄러움이라는 특정한 감정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장애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음.

구분	소관 위원회	의안번호(대표발의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202209(정춘생 의원), 2203363(임오경 의원), 2206909(고민정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2219578(권향엽 의원)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19588(권향엽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19583(권향엽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19589(권향엽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2219579(권향엽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19582(권향엽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219575(권향엽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19580(권향엽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2219576(권향엽 의원)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보건복지부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공포, 모욕감, 혐오감, 불안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개정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3.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 범위 확대(안상훈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illegible]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4. (생략)

<신 설>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 •

1. ~ 14. (현행과 같음)

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
한다)

16.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인에 한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며(같은 법 제2조제4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임(같은 법 제2조제3호·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④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2025년 12월 기준 전국 보건진료소는 1,894개소가 있고, 인력은 1,829명인데 동 인력은 전원 의료인임.

〈보건진료소 설치 및 의료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지역	설치 현황	인력 현황	
		의료인	의료인 외
서울특별시	0	0	-
부산광역시	5	4	-
대구광역시	18	18	-
인천광역시	25	25	-
광주광역시	10	10	-
대전광역시	7	7	-
울산광역시	11	11	-
세종특별자치시	7	7	-
경기도	154	147	-
강원특별자치도	129	129	-
충청북도	158	157	-
충청남도	236	237	-
전북특별자치도	237	229	-
전라남도	330	313	-
경상북도	299	287	-
경상남도	220	200	-
제주특별자치도	48	48	-
계	1,894	1,829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노인 등에게 진찰·검사, 예방 접종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⁸⁾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 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한편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⁹⁾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를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있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위탁·대행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진료소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

9)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반면, 지역보건의료 기능을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은 대상 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의 판단기준도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례를 고려하여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가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노인의 의료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안 제39조의17제1항제15호) 수용 · 현행 제39조의17제1항제7호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만을 취업이 제한되는 노인관련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되는 보건진료소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시키는 데 공감함 ·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노인 등을 대면하여 진료·건강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노인관련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9조의17제1항제16호) 신중검토 · 지역보건의료 기능을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고 광범위해 노인관련기관에 포함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단서조항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는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해당하는 직무 및 직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부칙) 신중검토 ·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유사 법률인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2017헌마130 등)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및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의사협회	○ 신중검토 -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의 노인학대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관련범죄로부터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노인을 직접 대면하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취업제한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특히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위탁기관·단체는 대표자와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노인 보호라는 공익과 취업 제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문언만으로는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일선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확대가 해당 지역의 필요인력 수급과 노인의 의료접근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관련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직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농어촌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인력 운영 및 노인의 의료접근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 적용방안을 세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문 의 처
02)6788-5499